

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

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)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『2020년 제2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』을 안내하오니 입주자(소유자) 여러분의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.

☐ 신청 대상 및 내용

○ 지원대상 : 관내 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 주택)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(2009. 12. 31.이전 준공건축물)

○ 지원대상 사업내용

-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, 유지보수
- 어린이놀이터 보수, 경로당 보수, 상·하수도 시설 관리 등
-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, 방범용 CCTV설치(단지 내)
- 안전등급기준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을 받아 긴급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한 시설
-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

※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.

○ 신청기간 : **2020. 8. 3.(월) ~ 8. 14.(금)**

○ 신청장소 :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☎ 560-4738, 4737)

○ 신청자 :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

※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며,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(대리인)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구비서류(붙임 참조)

-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
- 사업계획서 1부(지정서식)
-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또는 입주자 동의서 1부
- 공사비 산출도서 : 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 근거자료

※ **견적서 등 산출근거자료는 업체별 1부씩 총 3부 필히 첨부**(동일한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)

☐ 지원규모

○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(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)

총사업비	지 원 기 준		비 고
	의무관리	임의관리	
7백만원 이하	전 액	전 액	
7백만원 초과 ~ 2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75/100범위내	총사업비 x 85/100범위내	
2천만원 초과 ~ 3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70/100범위내	총사업비 x 80/100범위내	
3천만원 초과 ~ 4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65/100범위내	총사업비 x 75/100범위내	
4천만원 초과 ~ 5천만원이하	총사업비 x 60/100범위내	총사업비 x 70/100범위내	

※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, 임의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.

※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

- 의무관리 : 300세대 이상,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
- 임의관리 :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

☐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

- ① 지원신청 ⇒ ② 현장조사(관련부서, 주택관리사협회) 및 타당성 검토 ⇒ (8.3. ~ 8.14.) (8월중)
- ③ 심의위원회 개최 ⇒ ④ 지원대상사업 결정 ⇒ ⑤ 사업시행 ⇒ ⑥ 보조금 교부신청 ⇒ (9월중) (9월중) (9월 ~ 10월) (공사완료 후)
-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⇒ ⑧ 정산서 제출

※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계별 지급 예정이며, 사업진행 사정상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☐ 신청 시 유의사항

-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, 사업참여 여부,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사업 결정 후, 사업 미시행시 타 신청단지에서 보조금 지원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고,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신청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수혜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, **지원 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**
- **제1차 지원사업 미선정 단지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기 신청한 것으로 인정함.**